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84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	발의 일자	심사경과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	권성동의원 (2205657)	2024. 11. 18.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5.2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(25.11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 (대안반영폐기)
	주호영의원 (2207145)	2024. 12. 31.	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25.7.1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(25.11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 (대안반영폐기)
	이해식의원 (2209516)	2025. 04. 01.	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25.7.1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(25.11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 (대안반영폐기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5. 11. 26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(2025.11.27.)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, 마약류의 단속·수사·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,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(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).
- 나.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(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).
- 다.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(안 제20조제2항).
- 라.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사의 실시대상, 실시의 시기·주기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- 마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(안 제27조 단서).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제20조제2항 중 “시험방법,”을 “시험방법(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검사를 포함한다),”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마약류검사 실시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, 실시의 시기·주기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 단서 중 “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·제58조의2·제59조부터 제

64조까지·제65조의2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6호의2,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다. 1. ~ 6. (생 략) <신 설>	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
7. (생 략)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생 략) <신 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<u>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</u> <u>성의약품 중독자</u>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----- -----
9. · 10. (생 략) 제20조(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, <u>시험방법</u> ,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 <u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</u> <u>률</u> 」에 따른 죄 9. · 10.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시험방법(신규채용</u> <u>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</u> <u>의2제1항의 검사를 포함한다).</u> -

<신 설>

제27조(당연퇴직)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

제22조의2(마약류검사 실시) ①

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, 실시의 시기·주기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당연퇴직) -----

해당하고, 제8조제2항제6호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·제3호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<u>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</u> 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·제58조의2·제59조부터 제64조까지·제65조의2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</u> 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--	---